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05 - 036호

(사건번호 : 201711조사061)

안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대표이사 박정호

의결연월일 2018. 1. 24.

주 문

1. 피심인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크기·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23,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7.9말 기준 27,048천명으로 전체시장의 48.6%를, 매출액은 '16년도 기준 123,505억원으로 49.4%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27,048 (48.6%)	123,505 (49.4%)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매출액 '16년도 기준), MVNO 가입자 제외

나. 법인시장 현황

-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 중 법인영업 가입자 수는 646,713명이었다.

< 조사 대상기간 중 개통건수 >

구 분	조사 대상기간	법인 영업
피심인	'16.8 ~ '17.8	646,713

다. 조사경위

- 피심인이 삼성생명보험(주)에 이동통신단말기를 법인영업 형태로 판매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한겨레신문, '17.8.28)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 조사대상기간('16.8 ~ '17.8) 중 피심인의 관련 법인영업 판매 건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다.

< 법인영업 조사대상 현황 >

구 분	법인명	조사대상기간	단말기	조사대상건수
피심인	삼성생명보험(주)	'16.8. ~ '17.8.	갤럭시탭	29,628

나. 행위사실

1) 과다지원금 지급

- 조사대상기간 중 피심인이 법인영업을 통하여 판매한 29,628건의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피심인이 29,628건(위반율 100%)의 가입자에게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과다지원금 지급건수 >

구 분	기 간	조사대상 건수	과다지원금 지급 건수	과다지원금 지급 수준(원)	위반율 (%)
피심인	'16.8~'17.8.	29,628	29,628	258,400	100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 o 피심인의 법인영업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8,400원이 가입유형별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피심인은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피심인의 가입유형별 개통건수 >

구 분	합 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29,628	5,644	1,443	22,541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o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은 1)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2)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과징금)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이 법인영업(삼성생명보험(주))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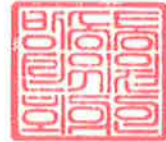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영업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법인영업 형태로 판매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다.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해당 사항 없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및 나.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가. 기준금액

-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4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7,705,176,192원이다.

피심인의 법인영업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29,628명) × 평균가입기간(24개월) × 가입자당월평균수익(10,836원) = 7,705,176,192원
 ※ 법인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가입자 대신 법인가입자의 ARPU, 평균가입기간을 적용

-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위반율은 100%이나, 법인영업 중 위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위반행위가 특정법인에 한정되어 발생하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이지는 않은 점,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2% 이상 3% 미만)을 부과 하되, 그 범위 중에서 2.9%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 이에 따라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위 관련매출액(7,705,176,192원)에 2.9%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23,450,110원이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해당 사항 없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해당 사항 없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2억 2,340만원(십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